

전주송북초등학교

전교 푸른 꿈 어린이회 임원선거규정(안)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어린이 스스로가 자유로운 의사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올바르게 전교어린이회임원을 선출함으로써 민주주의 역량과 자치능력을 키워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는 전교어린이회임원(이하 "전교임원"이라한다)은 다음과 같다.

1. 회 장 1명
2. 부회장 2명(6학년 1명, 5학년 1명)

제3조 (임원의 임기)

1. 전교어린이회 임원은 한 학기로 한다.
2. 다음 학기 고문 위원회의 역할은 어린이회 운영계획에 있다.

제4조 (학생선거관리위원회)

1. 전교임원의 선거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생선거관리위원회(이하 "학생선관위"라 한다)를 두며 그 활동기간은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선거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2. 학생선관위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투표자명부작성에 관한 일
 - 2) 후보자등록에 관한 일
 - 3) 선거운동관리에 관한 일
 - 4)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일
 - 5) 당선인결정에 관한 일
 - 6) 기타 선거에 관한 필요한 일

제5조 (학생선거관리위원회 위원)

1. 학생선관위의 위원은 전교어린이회에서 5학년 이상, 차년도 전교임원 선거 시에는 4-5학년 담임의 추천으로 교직원 회의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2. 학생선관위는 위원명단을 선거일 공고 일에 공고(붙임 제1호 서식)하여야 한다.
3. 학생선관위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은 전교임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5. 선거 기간 중 전학 등 위원 활동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장·부위원장)

1. 학생선관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활동을 추진한다.
3.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업무를 대신한다.

제7조 (선거일정 공고)

학교장은 교직원회의 협의를 거쳐 선거일정을 결정하되 늦어도 선거일전 7일까지 공고(붙임 제2호 서식)하여야 한다.

제8조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하 "선거권자"라 한다)은 선거일공고일 현재 4학년 이상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차년도 전교임원 선거 시에는 3-5학년 재학생으로 한다.

제9조 (투표자명부의 작성)

학생선관위는 선거일공고일 다음날까지 투표자명부(붙임 제3호 서식) 1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때 출석부 사본이나 학생실태를 투표자명부로 대신할 수 있다.

제10조 (입후보자격)

1. 회장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학생은 6학년에, 부회장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학생은 5,6학년에 재학하여야 한다.
2. 차년도 입후보하려는 학생은 5학년에, 부회장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학생은 4,5학년에 재학하여야 한다.
3. 전교어린이회 임원은 해당 학기의 학급 푸른꿈 어린이회 임원을 겸할 수 없다.
4. 1학기 전교어린이회 임원은 입후보할 수 없다.
5.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수행하며, 학교의 공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학생으로 한다.
6. 전교어린이회 사업 운영을 위해 개인의 시간 사용이 가능한 학생으로 한다.
7. 전교어린이회 사업 운영을 위해 다른 임원 및 회원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학생이어야 한다.

제11조 (후보자 등록)

1. 임원선거에 후보자등록을 하려는 학생은 선거일공고일로부터 2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학생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후보자등록신청서(붙임 제4호 서식) 1통
 - 2) 추천장(붙임 제5호 서식) 1통
 - 3) 담임 추천장(붙임 제12호 서식) 1통
2. 후보자는 4학년 이상의 재학생 중 10명이상 20명이하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하며, 추천자는 후보자 1명만을 추천하여야 한다.
3. 차년도 후보자는 3~5학년 재학생 중 10명이상 20명이하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하며, 추천자는 후보자 1명만을 추천하여야 한다.
3. 후보자는 후보자의 학급 담임 선생님의 추천장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학생선관위는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즉시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하고 후보자 명단을 공고(붙

임 제6호 서식)하여야 한다.

5. 학생선관위는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 때와 후보자가 사퇴한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공고(붙임 제7호 서식)하여야 한다.

6.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생선관위에 본인이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선거운동)

1. 후보자와 선거권을 가진 학생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2. 후보자와 선거권을 가진 학생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선거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한다.

3. 후보자 및 선거운동을 하는 학생은 선거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을 하여야하며 학생다운 검소한 선거를 치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부당한 선거운동 제재)

1. 학생선관위는 후보자가 다음 사항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1차로 경고하고, 다시 그러한 행위를 반복할 경우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 무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선거권 자에게 음식물 또는 선물 등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을 하는 경우

2) 다른 후보자를 헐뜯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경우

3) 다른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

4)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후보자의 학부모가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후보자가 한 행위로 본다.

3. 학생선관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를 하거나 등록을 무효로 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련자에게 설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학교 위원회는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직원회의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14조 (후보자 벽보)

1. 후보자는 기호, 성명, 사진, 자기소개 및 공약사항 등을 기재한 2매 이내의 벽보를 작성하여 후보자 등록마감일 다음날까지 학생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후보자 벽보의 규격은 4절 이내(394mm x 545mm)로 작성하며, 벽보 제작을 외부에 제작을 의뢰하지 않고 본인이 만든 것으로 해야 한다.

3. 학생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벽보를 게시판과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복도 등에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붙인다. 다만, 규정된 날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후보자의 벽보는 붙이지 아니한다.

제15조 (소견발표회)

1. 후보자는 합동소견발표회와 개인소견발표회를 통하여 자신의 소견, 공약사항 등을 선거권 자에게 알릴 수 있다.

2. 학생선관위는 선거 기간 중에 선거권을 가진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1회의 합동 소견 발표회를 열어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소견발표회의 발표시간은 후보자마다 5분 이내로 하고, 발표순서는 후보자의 추천으로 결정한다.

4. 후보자는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학급을 돌아다니면서 개인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이때

선거운동으로 수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16조 (투표)

1. 선거권자는 투표에 있어 1인마다 1표를 행사할 수 있으며 비밀투표로 하되, 투표 양식은 기표식 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2. 투표소는 투표시 직전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3. 투표용지(붙임 제8-1, 8-2호 서식)는 학생선관위가 작성한다.
4. 투표사무는 학생선관위 위원이 담당하며, 필요할 경우에 학생선관위 위원장은 적정인원의 학생을 투표사무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5. 학생선관위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은 투표자명부와 대조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1매씩 교부하여야 한다.
6. 학생선관위 위원장은 투표가 끝난 즉시 투표상황을 선거록(붙임 제9호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7조 (개표)

1. 개표 장소는 투표가 끝나기 전까지 학생선관위가 설치하여야 한다.
2. 개표사무는 학생선관위 위원이 담당하며, 필요할 경우에 학생선관위 위원장은 적정인원의 학생을 개표사무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3. 다음 사항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기표식인 경우]

1. 학생선관위에서 만든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후보자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이상의 후보자란에 "○"표를 한 것.
4. 어느 후보자란에 표를 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5. "○"표 대신에 다른 기호나 표시를 한 것.

[기명식인 경우]

1. 학생선관위에서 만든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후보자의 성명이나 기호를 쓰지 아니한 것.
3. 2명이상의 후보자의 성명이나 기호를 쓴 것.
4. 어느 후보자의 성명이나 기호를 쓴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5. 후보자의 성명이나 기호이외에 다른 사항을 쓴 것.

4. 다음 사항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유효로 한다.

[기표식인 경우]

1. 한 후보자란에 2개 이상의 "○"표를 한 것.
2. 후보자의 구분선상에 "○"표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3. "○"표한 것이 전사(접을 때 겹쳐서 찍힌 것)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기표식인 경우]

1. 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기호를 두 번 이상 기재한 것.
2. 후보자의 성명이나 기호 이외에 다른 표시를 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것.

5. 무효표가 애매한 경우 학생선관위에서 결정한다.

6. 학생선관위 위원장은 개표가 종료되면 즉시 개표결과를 발표하고 선거록을 기재하며 투표지를 포장한다.

제18조 (투·개표참관인)

후보자는 투표 및 개표참관을 위한 투·개표참관인을 2명이내로 선정하여 그 명단을 선거일 전일까지 학생선관위에 제출(붙임 제10호 서식)하여야 하며, 투·개표참관인은 투표와 개표진행과정에서 잘못이 있는 때에는 학생선관위 위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 (당선인 결정)

1. 학생선관위 위원장은 개표결과 6학년 회장후보자중 최다득표자를 회장 당선인으로, 부회장 후보 중 6학년 후보자중 최다득표자와 5학년 후보자중 최다득표자를 부회장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 회장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1명이거나 후보자 등록마감 후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 등이 되어 후보자가 1명이 된 경우에는 무투표당선으로 결정한다.
3. 5,6학년 부회장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1명이 된 경우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4. 제1항의 개표결과 득표수가 동일한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재학기간이 오래된 후보자를, 동일할 경우 생년월일이 빠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5. 학생선관위는 당선인 결정 후 당선인 명단을 학교장에게 제출하고, 그 명단을 공고(붙임 제11호 서식)하여야 한다.

제20조 (재선거)

1. 다음 사항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 1)등록된 후보자가 없을 때
 - 2)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한 때
 - 3)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당선무효를 결정한 때
2. 재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내에 실시하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21조 (보궐선거)

전교어린이회 회장 및 부회장이 모두 임무를 계속하여 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학교장이 사유발생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22조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

1. 선거 또는 당선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학생은 당선인 공고후 10일 이내에 교직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교직원회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의 결정하되 사전에 이의신청자와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들은 후 선거 또는 당선에 관하여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당선무효)

당선인이 이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24조 (보칙)

1. 선거담당교사는 어린이들에게 선거절차 및 깨끗한 선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학생선관위 위원이 스스로 선거를 관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2. 학생선관위위원장은 개표가 끝난 후 선거록 및 포장된 투표지를 선거담당교사에게 제출하고, 선거록은 임기 중 포장된 투표지는 이의제기 기간 후 파쇄한다.
3. 개표 결과 이의제기 기간은 당선인 발표로부터 1주 이내로 한다.
3.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4. 이 규정은 교직원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4년 1학기 전교어린이회 임원선거부터 적용)